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4 선고 2020가단254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B 주식회사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6. 4.

## 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,421,188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각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김정민

별지